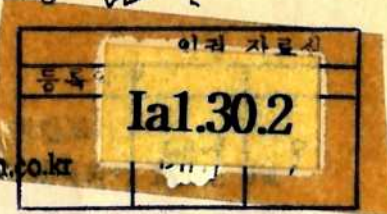


발신: 김 문영 (2시(경) 연락주세(은.)

수신: 조영환, 송주선, 박재호, 배기영님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email/m321@chollian.dacom.co.kr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국제연합(UN)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 최초보고서 심의회 참가
일자: 1996년 11월 14일
전송장수(표지 포함): 장

보도자료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따른 정부보고서 심의회 참가

안녕하십니까?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국제연합(U.N.)의 주요한 국제협약 중의 하나인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제연합의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표들을 파견하였습니다.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민간단체의 의견에 대한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고문방지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의 요약은 별첨하니 참조하십시오. 반박보고서를 공동제출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전송 중 이상이 있으면 전화 522-7284 또는 팩스 522-72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정부 최초보고서 국제연합에 제출

국제연합(U.N.)의 주요한 국제협약 중의 하나인 고문 및 기타 잔혹한·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이하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협약을 승인한 당사국은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지 1년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4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해당정부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일반적인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륙별로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뽑힌 인권분야의 전문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1995년 12월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보고서를 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996년 11월 11일부터 22까지 개최되는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기중 심의받도록 예정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사항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한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을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 할 국제, 국내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민간인권단체 반박보고서 제출

고문은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신적 파괴를 가져오는 극악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조차 빈번히 자행되어왔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고문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4년에 한번 있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사는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뜻깊은 기회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문제점을 은폐하고 장점만 부각시키게 마련인 부실한 정부보고서를 심사함에 있어 위원회가 한국의 실정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에 종지부를 찍고.....(중간생략)....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각자의 창의와 자유가 보장되면, 다양성이 수용되는.....(중간생략)....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한국정부 최초보고서 서문에서 인용) 출범한 문민정부아래서 고문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실제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간 고문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민간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보고서 작성에 반영했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제연합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 비정부단체들을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부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심의와 관련하여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에 보탬이 되고 민간인권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민간인권단체의 대표로 차지훈변호사(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김수지(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씨를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파견하였다.

3. 한국정부 최초보고서 심의 결과

이번 위원회에서는 러시아, 한국, 알제리, 우루과이, 폴란드, 조지아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며,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는 11월 13일(현지시각) 하룻동안 이루어졌다. 위원회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고관 주판직씨(Mr. Bostjan M. ZUPANCIC 슬로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와 록미씨(Mr. Mukunda REGMI 네팔)를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범규정의 모호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록미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가 올해 초 52차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한국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씨도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특히, 불고지죄에 대해 언급하였다. 결국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협약 제 2조 2항 "...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상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될 수 없다."에 위반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외에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특히, 의뢰인에 대해 고문방지과 관련된 교육이 없다는 사실과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문제, 고문범죄에 대한 조사시 공정성 보장 배상시 의료 및 재활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고문방지를 위해 범규정보다 실재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있다 없다 등의 간략하고 궁색한 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한국의 고문상황과 관련해 이번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의 정보만 대변하였다며 민간인권단체보고서가 왜곡,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등 결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정부대표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고서를 정부 스스로 복사해 배포하는 등 국제사면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하던 과거 행동과도 모순된 태도이다.

4. 민간인권단체의 의견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권고사항에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유감스러우나 권고사항 중 제 4, 5, 6, 7, 8항이 구체적인 권고 조치라는 점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번 최초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받는 과정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과거인권 침해 및 현실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그 실천을 약속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우려사항을 국내법제도와 관행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별첨> 고문방지위원회의 결론과 권고 요약

1. 서문

구체적이고 시간맞춰 제출된 한국의 최초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정부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A. 긍정적인 면:

1. 93년 이후 달라진 점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
2. 법개정 또한 환영한다.
3. 사면과 같은 조치를 격려한다.
4. 법률구조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족스럽다.
5. 많지는 안을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처벌 및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거부한 사례들도 격려한다.
6. 한국이 안고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식도 감사한다.
7. US, France, Canada, Australia와의 상호법조약(mutual judicial treaties)를 격려한다.

B. 장에요소:

한반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협약 2조 2항에 의하여 그 어떠한 특수한 상황도 고문이나 그외 비 인도적 처우/처벌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C. 우려사항(Subject of concern)

1. 협약 1조와 일치하는 고문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2. NGO's Report에 따르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 많고,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 관행화되어 있음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 잠안재우기 같은 관행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구속기간(또는 심문기간)이 너무 길다.

4. 신속, 공정한 조사, 조약? 보장 안되고 있다.

5.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규정 많아 자의적 적용소지 많다. 자의적 적용에 대한 매우 위험성 있다.

6. 정부보고서도 구제사제 1건만 언급, 보상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7. 수사기관의 1차 10일 구금기간동안 법원의 관여 절차없는 것 문제다.

1) 권고사항(Recommendations)

1. 조약 1조에 부합하는 고문에 대한 정의 규정 두어야 한다.

2. 국내법이 고문방지조약이나 기타 인권규약에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 종사자,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해야 한다.

4.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해야 한다.

5. NGO's 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태에 대하여 조사/수사하고 위원회에 서면보고하라. →

6. 구금기간 (30일, 50일) 너무 길다. 줄여라.

7. 질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하라.

8. 유보(조약 21,22조) 철회하라.

18년 7월 27일
 76상사. 76인사
 18상강국경명상심사
 인민군
 남북회담
 남북회담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	번호
	C1 -3	10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522-7284 팩스/522-7285 email/m321@chollian.dacom.co.kr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국제연합(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심의 중
 일 자 : 1996년 11월 14일
 전송장수(표지 포함) : 3 장

보 도 자 료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급속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 따른 간략정부 최초보고서 일식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네바에서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협약을 승인한 당사국들이 본 협약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합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1995년 12월 동협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보고서를 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를 심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지난 11월 13일 (현지시각)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는 이번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는 황영식 대사의 9명의 한국정부대표들이 참가하였고,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공동으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차지훈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김수지(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씨를 제17차 고문방지위원회 회의에 파견하였습니다.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반박보고서를 공동제출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이하 소속 회원단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인권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전송 중 이상이 있으면 전화 522-7284 또는 팩스 522-72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고문방지위원회의 각국 정부보고서의 심의

국제연합(U.N.)의 주요한 국제협약 중의 하나인 '고문 및 기타 잔혹한 ·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 발효되었다. 정부보고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해당정부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한 후, 일반적인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권고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대륙별로 뽑힌 인권분야의 전문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권고사항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한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이므로 한국정부는 이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국제, 국내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의 심의

4년에 한번 있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사는 한국의 고문과 관련된 인권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뜻깊은 기회이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심의와 관련하여 한국인권상황의 개선에 보탬이 되고 민간인권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한국정부 최초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 17차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번 위원회 회기중에는 러시아, 한국, 알제리, 우루과이, 폴란드, 조지아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최초보고서는 11월 13일(현지시각) 하룻동안 이루어졌다. 위원회내에서 한국정부 보고서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보고관 주판직씨(Mr.Bostjan M.ZUPANCIC 슬로바니아 헌법재판소 판사)와 데그미씨(Mr.Mukunda REGMI 네팔)를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범규정의 모호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50일의 구금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데그미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가 올해 초 52차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한국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씨도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특히, 불고지죄에 대해 언급하였다. 결국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은 고문방지협약 제2조 2항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체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 관행화되어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의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특히, 의료인에 대해 고문방지과 관련된 교육이 없다는 사실과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문제, 고문범죄에 대한 조사시 공정성 보장, 배상시 의료 및 재활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고문방지를 위해 범규정보다 실제관행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시사대안잡지사, 이권익에 대한 권익옹지에 대한 권익옹지서.

-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해야 한다.
-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언급된 고문피해사례에 대하여 조사/수사하고 위원회에 서면보고하라.
- 구금기간이 (30일, 50일) 너무 길다. 줄여라.
-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하라.
- 협약 21,22조를 한국정부가 유보한 것을 철회하라.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있다, 없다 등의 간략하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한국의 고문상 황과 관련해 이번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민간단체의 정보만 대변하였다며 민간인권단체보고서가 왜곡, 과장되었다고 말하는 등 결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정부대표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 국제사면위원회의 인권보고서를 정부 스스로 복사해 배포하는 등 국제사면위원회의 객관성을 보장하던 과거 행동과도 모순된 태도이다.

3. 민간인권단체의 의견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던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한국정부가 이번 최초 정부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의받는 과정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과거인권침해 및 현실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그 실천을 약속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인권단체들이 지적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추가로 위원회에 답변하도록 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한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지켜져야하며, 국내법제도와 판행을 이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수신: 민가형, 진영란 변호사, 사경방, 인의형 ①
(배기영님)

발신: 김기연 / 김문영 간사 (Tel. 522-7284)
발신: 차지훈 유

주제: UN 군분방사위 1차 회의 한국 본사 회의
라철빛 결과 보고.

* ~~본도자금~~ 본도자금 조성중이며 한시간 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연락수십시은. 항 11장. -김 간사.

1. 1차 군분방사위 회의

- 11월 11 ~ 22 까지.
- 회의 대상 국가: 러시아, 한국, 알제리, 우크라이나, 폴란드, 조지아

2. 한국 본사 회의

- 가. 11.13 (수) 한국 본사 회의 (회의) 회의
- 나. 본사본 ① Mr. Bastian M. Zupancic. Slovenia.
② Mr. Regmi. Nepal.

다. 2차 Secession (10:30 ~ 12:15)

- 한국 정부 대표: 황영숙 총사 외 9명
(법무부 3명, 내무부 2명, 국방부, 외무부)
- 30분 가량 정부 대표 황영숙 총사 기조 발표.
: 정부 본사 요청 발표
- 한국 본사 2명 발표

Mr. Zupancic, Mr. Regmi 각 30분씩

- 2차 Mr. Sorenson (Denmark. 의사)
- Mr. Gonzalez Poblete (Chile)
- Ms. Iliopoulos - Strangas (Greece)
- Mr. M. Yakovlev (Russian Federation)
- Mr. Burns (Canada)

추가 질문 칸.

- 일보 내용.

① 라서 컨슈머의 권리에 대해 11월 12일 이틀을 이해하

② 양도 계약이 국가보안법의 제정 이유 대해 언급

- 보르나 Regma : 프랑스의 2차 특별법인 Aba 110

- 보르나 의 3차 제정, 어떤 이유에서든 상충할 법안

인정하면서 3차 ~~제정~~ 왜 말도 안 되고 결론

- 러시아 Yakovlev.는 국가보안법에서 철거될 예정

타는 법이든 유선으로 취학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 특히 3차 510 (불안) → Guba 나 Nazier 주권인 A

제도라 같은 느낌 준다.

- 3차의 50인 구리만 너무 많다 정당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 결국 3차법은 3차 510 (2) 위항 다하기.

③ 양도 계약이 철거될 때 2차에 관한 양도 제정 없을 지적

④ 양도법 110에 4차기반 조항. 특히 이종언에 대해 2차 법안과 관련된 조항이 없도록 지적

⑤ 2차 법안에 대한 양도 시료 문제 - 양도 시료로 하면 불행 경우 있나?

⑥ 구리 시료로 관련하여 2차의 2기 특히 2차 법안 문제 언급 구리시료에 대한 의회적 접근권 보장 문제 언급

⑦ 2차 법안에 대한 2차 시료 양도 시료 문제 언급

⑧ 2차 법안에 대해 법제권보다 상충할 법안 제정 필요 강조

⑨ 2차 법안에 대한 2차 시료 제정 배상에 의회적 논의. 새로 제정 필요 언급. 특히 양도 제정법에서 의회적 제정 없을 것! 언급. 제정, 의회 기구에 대해 지적 등

⑩. 사형제도는 어떤 범주 기반. 사형수 수 등에 대한
논의.

⑪. 형량 등. 그 예로 다량치 양형 지침. 한반도의 상황
유형적 정상의 형식 있음.

⑫. NGO's Report & Amnesty Int'l 보고서에
근로 피해사례 (박창희, 고대훈, 유정식, 박동 ~~유~~ 김성민

황대권) 언급 - 설명 요구함

⑬. 기타 다른 악문 검토 하필의 중생권 습변으로 있음.

⇒ 한국 인의 심의 전는 Russia 심의서 보다 많은 위용
특히 원세 결혼 특히 위용은 대부분 한국 정부 및
연방국에 의해. 인천 항상 위한 노력 평가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형 제정의 보호성 지점
특히, 고문나 의무성 수사에 대해 많은 의의 있음

米.
Amnesty가
제출한 보고서
한미인간단체
보고서 검토 인용.

<정무승변 15:00 ~ 15:45> -- UN Voluntary Fund for Victims of Torture. 이대아
\$20,000
기원하는
하고 당면 사안

1. 국가는 생존, 인권의 수호 위한 최선한 의무
- 국제 공의 약속 사항 언급.
- 정부를 인정한 해 소거 없애기 위해 치른 홍보 거정 강조!
- 양자문 체결 후 첫 (내용 물론 이야기 같이 보느것음) 약속.

2. NGO's 보고서 다량 태문 (우리 인에 알려준 것 있음)
예로 ① 전방의 기발한 수습장 해성 ② 정황의 수습장 운영
역한 해성 잘못임. ③ 적당 함도
- Amnesty Int'l 보고서들 정부 ~~관련~~ 관중 하-기
- 한국 NGO 쪽 정보만 대변 (9월 방문 때)
- 방송된 사건 - 변호사 13명 예수 권변. 의사 정진.

9. 고문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 특별 수사장청
청약이 신변보호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구금기간 10일이 기본이고 연장시 1개월 이하밖에 안 된다.
국외 출외사 무죄판 0.2%는 남용되지 않는다.
증거야.

5. 변호인의 참여권 (심문시)은 보장 안됨 - 수사지연 때문
정당한 보상도 없다.

- 구금소에 대한 치료성 접근권도 보장 안됨, incommunicado
구금도 없다.

12. { 20년 이상 안 장기수가 22명 - 이들은 모두 재판이나 기소나 고소로 인
정당한 범죄로 하더라도 화해 (repentance)를 하면 사면 가능하
이유에 대한 하대도 없다.

6. 고문법칙에 대한 기소건수 많다. 증거가 없기 때문.

7. 국외출외사 1990년 이후 계속 증가를 보인다.
국외출외사단체에 대한 수사가 많기 때문이다.

8. 국외출외사 5년 정도 많다.

9. 치료법 교육 (대부분 나성은 없음) 이루어지고 있다.

10. 구금소에 대한 의원적 처우 충분히 되고 있다.

11. 협박 등이나 다른 불법이행은 불합의, 범죄성 이용가능성
때문이다. 또는 국내 재판 재야의

위험들이 다양한 길로써 여러 정부 단위를 매우 간략하였다.
상당히 짧은 기간 (예를 들면 고문법칙에 대한 Reform의 설명 등)
에 의한 단서가 있었다. 그럼에도 직원들의 추가 질문이 없었던 것은
뜻밖이다. 정부위원의 답변 즉 Piki (Cyprus)의 장기간 처우에 대해
부인이 "취급"하게 되는 것은 - 정부위원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by the CAT.
by Mr. Zupancic

Introduction:

구체적이고 시안 맞춰 제출된 한국의 회초보고서를 환영하며 한국정부에게 감사하는바이다

긍정적인 면:

1. 93년 이후 ~~법~~ 달라진 법문조에 대해 환영한다.
2. 법개정 또한 환영한다.
3. 사면과 같은 조치를 격려한다.
4. 법률구조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족스럽다.
5. 많지는 안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처벌 및 고문을 인한 가해를 기록한 사례들도 격려
6. 한국이 ~~법~~ 입국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 정부의 의식도 감사한다.
7. US, France, Canada, Australia 등의 상호 법 조약 (mutual judicial treaties) 을 격려한다.

장애교소:

한반도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협약 2조 2항에 의하여 2 어떠한 특속한 상황도 고문이나 2의 비인도적 처우/처벌을 용납하는 수 있음은 강조한다.

C. 주요 사항 (Subject of Concern)

1. 협약 등 1차 일치하는 조문에 관한 성의 제정이 없다.
2. NGO's Report에 따르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 많고, 감안제도가 높은 가혹행위 인정률 등이 있음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 감안제도가 갖는 본질 리용되어서는 안된다.
3. 구치소 (K.A. 심문소)의 개혁 없다. 인간권 (가장 중요) (인권장권, 가장)
4. 선속, 공정한 수사, 총알 보상 받기 있다.
5. 국가보안법을 모호한 규정 많다 자의적 적용도 많다. ~~이러한~~ 자의적 적용에 의한 배후 권위 있음 있다.
6. 정북 등도 국제사법기관에 이송, 보상제도 배후 비효율적이다.
7. 수사기관의 차 10억 구치소관 등도 법원의 관여 절차없을 것 문제다.

D. 권고 사항 (Recommendations)

1. 협약 등 1차 일치하는 조문에 대한 성의 제정 되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이 근본방지법이다 기타 인권차이에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3. 수사기관 등 수사, ~~이~~ 이를 이에 의한 근본방식에 대한 이 실시 되어야 한다.

4. 구공사업의 각시에 대한 동원적인 기구 설치해야 한다.

5. NED's 보고서에 대한 검토 기획사에 대하여 A4/인 회계 시정 보고하라. 조사/수사하고

6. 구공기금 (30억, 50억) 기금 관리, 결여라.

7.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하라

8. 유보(2억 5천, 11) 철회하라,

위원회 3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자의적 사항에 대한 구공 운영 그러나 권고사항에 3건 폐지 건의안을 우선, 권고 사항 중 4항, 5항, 6항, 7항 8항이 구체적 권고 조치, 특히 5항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추가 보고 요구, 그에 대해 반박 자료 제출 가능할 것

P.S. 김동영 씨 회리비용 일한 2대론 성이 분명하다. 간략히 평가 하겠지만 부도나가는 경우 부도 (3천, 4천) 중 심문: 2대론 2 회 사항 ~~바라~~. 2대론 내용은 위공회 보충 하겠음.